

현대사회의 규범적 정초 기획

권용혁

울산대 철학과

1. 서론

철학이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변화무쌍한 사회적 현실을 그 철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철학적 지혜가 작동되는 시점이 구체적 현실의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출 때에야 가능하다는 철학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현재 우리의 사회철학의 영역으로 국한시킬 경우 많은 부분이 사회 현실에 대한 분석과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철학적 기획을 세우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철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다른 영역, 다른 학문과의 접촉과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사유 영역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을 넓히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세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획의 일환으로서 근대적 이성과 합리성 개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그 영역을 달리하고 있는 다양한 합리성의 문화와 그것의 내부 논리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고찰하는 작업을 한다. 이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비판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규범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현실과 철학적 논점을 접합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근대적 이성의 문화와 수렴 과정을 올바로 이해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근대적 이성은 대상 세계를 합리화하면서 그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왔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영역을 억누르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떠기도 했으며 대상에 대한 객체화의 과정에서 타자와 자연의 변형과 파괴를 정당화하는 논법을 폐기도 했다. 또한 그것은 유럽 중심주의의 상징으로서 타문화에 대한 물이해와 비하의 기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성에 대한 내부,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비판을 전체 이성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하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이성비판이 이성의 자기-반성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원래 칸트적 의미에서의 이성비판이란 순수한 이론적인, 실천적인 그리고 미학적인 유형의 이성이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성은 항상 자신의 월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몽적인 이성비판은 자기비판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 이처럼 이성의 자기비판 능력을 인정할 경우, 이성은 자신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대상을 객체화하고 수단화하는 다양한 합리성에 대한 자리매김도 함께 수행한다. 합리성이 인식 영역의 구조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이성은 그러한 영역의 전체 등급과 이성 자신의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고 해명하는 문제를 다룬다. 합리성의 전망은 특수한 영역인데 반해서 이성은 전체성을 목표로 한다. 이성은 다양한 합리적인 형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논리적인 잠재력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며, 의식철학의 한계 내에서 작동되는 주관적 이성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서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선형화용론적으로 성찰할 경우 이 구분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 구분을 근거로 합리성의 유형들을 살펴볼 것이며, 그 중에서 사회적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식적 합리성 내지는 목적 합리성 개념이 갖는 특징과 그 영역 설정을 통해서 그것의 월권 행위를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분류와 사회적 현실의 분화과정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새로운 사회

운동들에 대한 몇몇 파악 방식을 대상으로 이성과 합리성이 사회적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보고자 한다.

2.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의 관계.

논리적·수학적 형식주의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해서만 학문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점에 따르면 가치의 세계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밀려난다. 합리적으로 근거지워질 수 있는 것이란 윤리적인 규범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되는 규범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과학적인 합리성)이거나 경험적인 사회과학을 통해서 규범이나 가치체계의 성립을 인과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것(기술적-도구적 합리성이나 전략적 합리성)에 국한된다. 이 경험적 과학들만이 현실에 대해 객관적이며 타당한 논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규범이나 가치판단은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주관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이 전세계화될 정도로 광범위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도식을 타당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인간 행위의 결과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실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천을 가치중립적으로 중재하려는 시도는, 즉 책임의 소재를 목적 합리성에 따라 개개인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서만 묻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책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가치중립적인 객관성과 사적인 도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 체계를 내장하고 있는 기술적, 도구적, 전략적 합리성(수단-목적-합리성, 축약해서 목적합리성)이 지닌 난점은 그것만으로는 사회적 행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실재적인 협약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개개인이 목

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할 경우 타인과 맺은 협약도 도구적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이 협약은 상호주관적인 규범적 구속력을 지닐 수 없다.¹⁾ 즉, 그 협약을 맺은 당사자들의 합의는 그들이 함께 만든 그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규범의 정당성 역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실제적인 협약의 성립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의 규범적인 구속력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이 이론을 근거로는 모든 민주주의에 기초가 되는 협약(조약, 헌법, 법률 등)이 어떠한 도덕적인 구속력도 갖지 못하며, 개개인의 도덕적 결단은 인류의 연대책임에 대한 요구에 대처할 의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규범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호주관적인 원리가 없다면, 윤리적 책임은 결코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개인의 자유로운 양심의 결단들이 서로에 대해 고립되어 있어서 실천적으로 연대성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사회적인 실천의 영역에서 그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2.1 상호주관적 이해를 추구하는 철학

이처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행위에서 목적 합리성을 근거로 형성된 협약들이 도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합리성의 다른 유형에 대해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사실상 형식 논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방식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의사소통적이거나 도덕적인 능력이 아니다. 이 두 종류는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문장들의 규범적인 내

1) 예를 들자면, 실증법은 규범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효율성을 강조할 뿐이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 법체계가 도덕적인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유도해낼 수 없게 됨으로써 효율성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즉, 합법성이 도덕성에 의해서 밀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흡스식 절대주의가 빠지는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 K.-O.Apel(1981) Bd. 2, 375쪽.

용에 관한 결정은 의미론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화용론의 영역에서 내려진다. 그리고 이 화용론의 심층구조는 상호인격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인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언어와 지시체 그리고 해석자’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화용론은 이론구성에 있어서 행위자의 해석 기능을 강조한다. 화용론은 의사소통이나 언어해석을 행위자나 해석자들 사이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근대적 주체의 내용인 주관적 자아의 명료한 의식을 기반으로 외부 대상들과 관계 맺는 의식철학의 주관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위자들의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체-객체-차원에서 전개되는 모든 의사소통적인 상호행위가 주체-주체-차원에 있는 연구자들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상 인식에 사용되는 주체-객체-관계는 그 인식 내용을 다른 인식 주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지는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대상에 대한 ‘이해’의 기반으로서 주체-주체-관계”²⁾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는 고립되어 있거나 도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타자와의 상호작용하면서 정립된 것으로서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상호주관적인 차원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주체의 반성적 능력도 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자의 타당성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증진된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상호주관적인 이해도 각각의 행위자들이 주관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주체-주체-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출발점도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이를 주체들이 함께 구성한 상호주관적 관계다. 이 관계의 바탕에 상호주관적인 이해가 놓여 있으며 이 범위를 논리적인 차원에서 무한히 확대할 경우, 그것은 언어적으로 매개된 무한한 의사소통 공동체로까지 확장된다. 이럴 경우 이 공동체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다 자유롭고 동등한 권한을 가진 주체들로

2) K.-O.Apel (1981) Bd.1, 27쪽.

서. 인정됨으로써 나와 타자는 전략적이거나 도구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격적인 관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의사소통적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 의사소통 공동체 이론은 대상과 언어의 관계나 문장 사이의 관계만을 객관적 서술의 기초로 삼는 전통적인 의미론이나 구문론과는 달리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규범을 인정함으로써 근대 이후 경험과학적 객관성 추구의 도식으로 받아들여진 가치와 사실의 분리라는 이분법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것은 의미비판을 그 기저로 한 선형철학으로서³⁾ 그 비판의 전제 없이는 모든 논증이 의미를 잃게 되는 이상적인 규범들을 밝히는 작업을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제기된 이론과 주장들을 상호주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그 의사소통에 참가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형적인 전제 없이는 논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모든 실재하는 의사소통 공동체 안에서 수행되는 논증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 논증이 무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현실 공동체에서 도출된 협약과 합의사항들을 상호 반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2.2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구조

사실과 가치의 분리 및 가치의 객관적 파악 불가능성 논증을 벗어나기 위해 의사소통의 윤리학은 의사소통 공동체 이론을 바탕으로 논증하고

3) 이것은 “의미비판적인 논증”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내용은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자가 스스로 논증하기로 결정할 때 혹은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의사소통에 참여할 때, 그 이전에 자신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수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제기한 논증이나 주장은 자신과 다른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 한다는 점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참고: Apel, Karl-Otto u.a.(Hrsg.)(1984) Dialoge 2 권, 111쪽.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논증 전에 이미 인정해야만 하는 다음과 같은 도덕적인 근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 토론상대자로서의 내지는 인격체로서의 모든 논증 구성원들의 상호 인정과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공동책임.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재하는 의사소통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사소통에서 이미 도덕적인 근본규범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논리학의 전제로서의 윤리학’⁵⁾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주장은 우리의 발언 내용에 포함된 수행적 부분과 명제적 부분을 구분하고 명제적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의사소통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화용론적 심층구조 안에서 전제로 하는 도덕적 규범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⁶⁾ 즉, 개인적인 의견들을 논리적이며 경험과학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논증은 그 논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한 선협적인 반성을 통해서 그 논증을 위한 전제들을 필수적으로 받아들인다. 논리학과 과학을 수행하게 하는 그 논증의 윤리학은 상호주관적인 타당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가치에서 벗어난 과학에 대한 언급들의 타당성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객관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가치에서 벗어난 과학의 객관성 자체가 윤리적인 규범들의 상호주관적인 타당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⁷⁾

이처럼 선협화용론은 논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들을 찾아냄으로써 그 논증의 의미와 타당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동시에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적인 진리 도출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 전제조건의 예는 “피해져야만 하는 수행적 자기모순의 원칙”⁸⁾를 통해서

4) K.-O.Apel/H.Burckhart(Hrsg.)(2001) 103쪽.

5) K.-O.Apel(1981) Bd. 2, 402쪽 각주 61.

6) 참고: K.-O.Apel (1981) Bd.2, 400-403쪽.

7) K.-O.Apel(1990) 36쪽. 비교: K.-O.Apel u.a.(Hrsg.)(1984) Studientexte 595쪽.

8) Apel, Karl-Otto u.a.(Hrsg.)(1984) Dialoge 2 권 114쪽 각주 6.

이 수행적인 자기 모순의 금지는 논리학-이론의 공리로서의 “a 이면서 non-a”라는 명제적인 모순의 금지와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이론이나

얻어진다. 즉,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혹은 “나는 어떠한 진리의 (의미의, 진리에 대한 믿음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라는 두 문장에서 수행적 부분을 언급한 주장자는 이 주장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할 전체 조건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자신의 주장 중 명제적 부분의 진리성과 수행적 부분의 옳음 등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둘은 이 전제를 위배함으로써 수행하는 당사자가 모순을 범하게 됨으로써 무의미한 문장이 된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근거설정 논증이 도입되는데⁹⁾, 그것은 사람들이 이론을 세우거나, 어떤 것을 주장할 때 혹은 논증을 하기로 결정할 때 이미 항상 받아들여야만 하는 전제 조건들로 반성을 통해서 되돌아갈 때 확보된다. 그 내용은 어떤 주장에 대해 상호 주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네 가지 타당성 요구들(그 문장의 이해 가능성, 명제적 부분의 진리성, 수행적 부분의 옳음 그리고 언어 발화자의 진실성)과 일련의 문법적인 전제들(논증 규칙들) 그리고 논증 참가자들이 상호 전제해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들로 구성된다.¹⁰⁾

어쨌든 논증 상황에서 특정한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것에 대한 상호 주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그 상호주관성의 영역을 확장할 경우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재하는 의사소통 공동체와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의사소통 공동체를 전제하게 된다.¹¹⁾ 즉, 의사소통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형성되며 이념적으로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타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의미와 타당성이 확보되는 ‘공공

공리들을 도입할 경우에 그 발언 스스로의 수행적인 일관성이 이미 전제된다는, 반성적인 통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 스스로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는 어떤 결단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바로 그러한 조건은 사고나 논증을 위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K.-O.Apel(1987) 5쪽.

9) 이 논증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고할 것: K.-O. Apel (1981) Bd. 2 222쪽. Apel, Karl-Otto u.a.(Hrsg.)(1984) Dialoge 2 권 104쪽. Apel, Karl-Otto u.a.(Hrsg.)(1984) Studientexte, 586쪽.

10)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W.Kuhlmann(1985) 73쪽, Apel, Karl-Otto u.a.(Hrsg.)(1984) Dialoge 2 129쪽을 참고하기 바람.

11) 참고: K.-O.Apel(1981) Bd. 2, 429쪽.

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참여자들끼리의 효율적인 의견 조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가능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윤리적인 원칙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 경우에 그 원칙은 협상모델에서 사용되는 단순한 수단-목적-합리성을 넘어서서 제 삼자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경쟁 당파들 끼리의 신속한 전략적 협상을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¹²⁾

이 원칙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 법치국가의 제도화된 규범들을 근거설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미 고려되고 있다. 특히 모든 관련된 요구 사항들을 일반화하려는 윤리적 원칙이 법규범을 제정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명백히 고려되어 있다. 이것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규범들을 근거설정하는 절차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상위규범으로서 의사소통 윤리학의 근본규범이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 형태는 정치를 매개수단으로 무한한 의사소통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민주적인 의지 형성을 위한 정치적인 절차가 이 이념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 체계로서의 민주주의가 할 일은 정치적인 의지 형성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은 지배에서 벗어나서 행해지는 토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

12) 이 논점을 보강하기 위해 아펠은 다음과 같은 합리성의 유형들을 도입, 분류하고 있다:

1. 과학적인 합리성, 2. 기술적-도구적인 합리성, 3. 전략적인 합리성, 4. 해석학적 합리성에 따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5. 담화윤리학적 합리성에 따르는 의사소통적인 합리성. 참고: K.-O.Apel(1995) 50f.

앞의 세 가지 합리성이 독백적이며 자기반성 없이 주체-객체-관계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한다면, 뒤의 두 가지 합리성은 담화적이며 수행적, 자기반성적인 합리성의 유형이다. 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기 위해서 화용론적 차원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후자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자는 협력 주체들의 상호주관적인 이해와 자기이해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를 근거로 설정된 규칙들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고 또한 민주주의는, 만약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들로서 담화적인 의지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당사자들은 그 사회의 기본 제도들과 정치적인 근본 결정들에 강요받지 않고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¹³⁾ 예를 들면, 근대 법 치국가에서 법 규범들을 근거설정하는 절차를 다룰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 외국인 노동자, 다음 세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경우, 이들 역시 인권 및 기본권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한 행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려는 시도가 우선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이 무한한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의 정당화와 사회적 실현이라는 거시적인 두 개의 전략은¹⁵⁾ 단순한 환원주의적 태도나 극단적인 유토피 아주의의 무정부주의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의 직접적인 실현에서 나타나는 테러나 공포정치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은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를 논증을 통해서 정당화하며 중재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구성된 것이다. 즉,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가 함축하는 바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제도들의 상위제도로서, 즉 모든 실재하는 제도들을 위한 정당화의 예로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윤리학의 이상적인 척도가 구체적인 현실상황과의 대치상태에서 수행하는 일은 윤리적-실천행위의 규범을 산출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한계들을 밝히고 그것의 장기적인 실현전략의 토대를 획득하는 일이다.

이 두 의사소통 공동체가 갖는 현실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특정상황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행위들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의 척도로서 혹은 규제적인 원리로서 사

13) 참고: Scheit, Herbert(1987) *Wahrheit-Diskurs-Demokratie*, Freiburg/München 375쪽.

14) 참고: Apel, Karl-Otto u.a.(Hrsg.)(1984) *Dialoge* 2, 135쪽.

15) 참고: K.-O.Apel(1981) Bd. 2, 429-431쪽.

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¹⁶⁾ 이 규제적인 원리는 지배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공상적인 유토피아적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인간사회의 자기주장의 체계로서의 생존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¹⁷⁾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과학적인 주장의 내적인 불일치를 논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적인 담화의 합리성을 그 전제로 삼아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과학의 진리요구는 모든 사고와 논증이 언어적인 해석과 그 규칙에 종속된다는 점 때문에 필연적으로 논증적인 담화의 터전에 진입하게 되며, 그것은 그런 한에 있어서 무한한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를 내포한 윤리학의 규범들을 인정하게 된다. 이 규범들에는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논증상대자들에게의 동등한 권리부여 뿐만 아니라, 대화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연대책임의 의무 등이 해당된다.¹⁸⁾ 이러한 거시윤리학적인 대안제시가 갖는 강점은, 개개인의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개인적인 생활영역에 국한시키는 형식적 합리성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근거로 재편성함으로써, 지구화 시대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규칙과 규범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철학적인 기반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3. 합리성과 새로운 사회운동

3.1. 합리화의 역설

근대 이후 진보사관을 주도해 온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

16) 비교: K.-O.Apel(1981) Bd. 2, 433쪽.

17) 비교: K.-O.Apel(1982) 337-340쪽.

18) 비교: K.-O.Apel u.a.(Hrsg.)(1984) Studientexte, 596-599쪽.

는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산력 향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내지는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개개인의 행위에 요구되는 가치판단과 윤리적 규범을 개개인의 사(私)적인 영역으로 밀쳐 놓았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근대 사회의 분화의 결과 사회적 행위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식적 합리성은 일상적인 실천의 거의 모든 영역을 가치중립적으로 합리화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마지막 가치와 목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주관적인 양심에 따라 결정되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⁹⁾

물론 통계적이거나 인과적인 설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과학의 기준들에 따라서 인간 실천의 일부분이 객관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대상화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분석할 경우 분석자는 인간의 행위를 도구적, 전략적인 대상으로만 고려함으로써 인간의 실천이 추구하는 목적을 학문적인 논의의 영역에서 제거함으로써 목적 자체를 정당화하는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이는 막스 베버에 있어서의 합목적적인 행위와 비교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데에 역점을 둔다.²⁰⁾

그러나 이것은 근대적인 합리화가 낳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원래 비합리적인 제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목표로 삼았던 서구적 합리화가 결

19) K.-O.Apel(1981) Bd. 2, 372쪽.

20) 그는 사회적 행위를 목적합리적, 가치합리적, 감성적, 전통적 행위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목적합리적(Zweckrational) 행위와 가치합리적(Wertrational) 행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가치합리적 행위는 행위자가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믿음을 근거로 그것이 가져올 현실적 결과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신념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목적합리적 행위는 현실적(개인적) 합리성과 형식적 합리성(완료 행정, 산업화에서의 규칙, 법률, 제도의 합리화)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궁극적 목표의 정당성이나 진리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 대신, 이 행위에 있어서는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참고: 막스 베버(1997) 146-149쪽.

국에는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사생활의 영역에 국한시켜 버림으로써 방향성을 상실했으며, 합리화가 인간 자신의 삶을 위해 봉사한다는 원래의 기능을 버리고 오히려 인간을 주어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객관화하고 대상화함으로써 원래의 목표가 전도되어 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형식적 합리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비합리성이 심화되는데, 예를 들면 경제영역에 있어서 돈을 버는 목적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에 매달림으로써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목적 자체를 상실해 버린 비합리적 상태로 떨어진다. 즉, 극단적으로 형식적 합리성에 매달리면, 합리적이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비합리성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적 합리성 안에서는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근대적 합리성이 그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실과 가치의 분리라는 근대적 이분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이 이분법적 논리에서 결정적으로 간파하고 있는 점은 과학적 방법론의 주요 임무가 주체-객체 관계를 분석하는 일일지라도, 그것 역시 사회적 현실성을 구성하는 부분의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과학적 분석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난 객관성 자체가 주체-주체간의 상호주관적인 타당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행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의 영역 역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가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방치해 온 마지막 가치에 대한 정당화의 문제가 철학적으로 새롭게 대두됨으로써 그 논리는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²¹⁾

21) 우리는 앞 장에서 이 재구성을 선험화용론적인 의사소통 공동체 이론을 중심으로 이미 살펴보았다.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20세기 후반의 사회적 상황에서 배태된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 보겠다.

3.2. 새로운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양상²²⁾

이러한 근대적 합리화의 역설 현상은 권력과 화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즉, 관료행정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목적 합리성(특히 체계화된 형식적 합리성)의 지속적인 강화는 일상생활과 개개인의 삶에까지 전반적으로 침투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이 삶과 사유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되었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삶의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의 분리를 체계 내화함으로써 실천의 문제, 당위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인 토론의 영역에서 제거시킴으로써 이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형식화, 체계화된 기준의 이론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는데, 이것은 1970년대에는 이른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운동들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혹은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영역의 문제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체계화된 형식적 합리성의 문제로는 포착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직접민주주의적인 방식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구조화된 사회체계 안에서는 분석 대상으로만 파악되던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사적 이지만 정치적인 공간”에서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도들은 기존의 체계에 흡수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님으로써 그 체계와의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적 통합 그리고 사회화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복지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위협받는 생활양식

22)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출고 권용혁(1998) 243-272쪽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을 방어하고 되살리는 문제다.²³⁾ 이는 사회적 규제와 감시만이 아니라, 물질적 생존도 함께 보장하는 포드주의적 보장국가가 1970년대 중반 이후 해체되면서, 관료적 중앙집중화로는 다루어질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²⁴⁾ 이들의 행위공간은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안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비제도적인 정치의 행위공간²⁵⁾이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사회운동들로는 소비자 운동, 환경보호 운동, 여성해방 운동, 반핵평화 운동, 시민권 운동, 생태주의 운동, 자연자원보호 운동, 낙태문제, 빈집점거 운동, 반인종주의 운동, 학부모의 교육투쟁, 지역공동체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삶의 질, 평등한 권리, 개인의 자아실현, 참여, 그리고 인권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²⁶⁾

성장중심주의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고 있는 이 집단은 신중간층이 주도하면서 주변부 집단이 그에 동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²⁷⁾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준의 정치, 사회적인 틀 안에서 내세우는

23) J.Habermas(1981) Bd. 2, 576쪽.

2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요아힘 히르쉬(1983) 107-114쪽을 참고하기 바람.

25) C.Offe(1987) 68-69쪽.

26) J.Habermas(1981) Bd. 2, 557쪽.

27) 참고: C.Offe(1985) 831-835쪽, J.Habermas(1981) Bd. 2, 577쪽.

이 운동에서는 운동의 일관성, 명확성, 조직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운동의 이슈, 조직, 정치적 성격, 발전방향과 전망에서 상당히 이질적이고, 분산적이며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그것은 기준의 체계에 대항하는 일종의 반대 운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C.Offe(1987) 71-72쪽. 이 운동들의 이슈와 운동형태에 관한 좀더 상세한 분류는 M.Vester(1989) 43f를 참고하기 바람. 또한 그 운동은 오히려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역할의 결합, 보조적인 행위와 중심적인 행위의 결합, 공동체와 조직의 결합을 강조하고, 특히 구성원들과 공식적인 지도부의 관계는 느슨하고 일시적일 뿐이다. C.Offe(1987) 70-71쪽. 이처럼 자유로운 참여와 결합으로 인해서 이 운동은 여러 계층간의 다양한 동맹이 가능해지는데, 특히 새로운 사회운동과 기존의 사회운동 사이의 각 운동부문을 중심으로 한 가능한 동맹방식의 구체적인 형태는 같은 책 95-98쪽에서 자세히 유형화되어 있다.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신 그들은 성(性), 나이 그리고 지역성과 같은 문제들에 혹은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경우에는 전체 인류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²⁸⁾ 따라서 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행동집단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추구하고 자아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를 요구한다.²⁹⁾

그들의 주요한 관심은 생활 자체가 – 구체적으로는 생활의 질, 평등, 자율성, 개인적 자아실현, 참여, 인간적 권리 등 생활세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치들이 –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합리화의 기계적인 동학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에 놓여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그 비판의 대상은 물론 비판의 기반도 인본주의, 사적 유물론, 계몽주의적 해방의 이념 등과 같은 근대적 전통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화에 대한 ‘근대적’ 비판³⁰⁾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후기자본주의의 불가피한 결과인 국가적 단위에서 제도화된 기술관료적 합리성의 증대와 동시에 이것의 문제해결 능력의 상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과는 다른 합리적인 기반을 근대적인 전통 안에서 재창출해내는 작업을 새로운 사회운동이 수행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운동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물리적인 삶의 조건과 평등과 참여의 고결함 그리고 사회조직의 평화적이고 연대적인 형태와 같은 가치들과 도덕적인 규범들 역시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근대적인 가치들의 선택적 재급진화’³¹⁾로 이해된다.

그들이 지니는 이러한 공유점을 기반으로 그 개별적 분산적 형태들을 의사소통의 장으로 옮려놓으면, 이들에 대한 규범적인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다. 즉, 이 선택적 재급진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타당성이 공론 영역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은 다양한 운동조직들의 논점이 논증의 형식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공론 영역에서의 상호 이해와 정당화 작업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됨으로써 그들 사

28) C.Offe(1987) 72쪽.

29) 멜루치(1980) 152f.

30) 같은 책 850쪽

31) 같은 책 853쪽.

이의 연대를 위한 터전이 확립될 수 있다. 이는 형식적 합리성에 대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재복구 작업을 뜻한다. 즉, 근대 이후 효율성을 앞세우면서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수단-목적-합리성은 상호주관적인 이해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구사회의 위기를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³²⁾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을 이 식민화 현상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생활세계 내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복원운동으로 파악하는 논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공론영역에서 그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 주장을 가능하고 타당하게 하는 규범적인 내용들을 의사소통의 전제로서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운동은 기존의 합리성 이론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넘겨받은 철학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운동이 근대적 합리성이 창출시킨 국가적 단위의 정치·경제·행정 체계가 (그리고 그것의 목적 합리성이) 제도화의 외부로 몰아낸 가치들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체계비판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³³⁾

4.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회복

그렇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확보된 규범성은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데 개입할 수 있을까? 만약 전략적 제휴가 협상과정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요구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제휴가 전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들 사이의 현실적인 힘 겨루기만을 통해서 관철된다면, 그 규범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들의

32) J.Habermas(1981) Bd.2 293쪽.

33) J.Habermas(1981) Bd.2, 577쪽.

절충 결과는 누구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에 있어서 힘의 역학관계와 우연성만이 작동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흡스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제 3의 강압적인 힘을 상정하는 것 이상의 논점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문제는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달리 말하면 다양한 세력들의 충돌과 절충을 통해서 진행되는 현실적인 운동의 양태가 목적합리성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그것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 제휴의 형태를 모색하려면,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무제한적인 토론과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의 도출이라는 이상적인 절차를 상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에야 비로소 그 제휴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험화용론적 의사소통 공동체 이론은 바로 이러한 비판과 연대를 위한 규범적 기준을 구성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을 철학의 주 업무로 삼고 있다. 이 이론이 화용론적 전환을 통해 수행적인 일관성을 핵심 논점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공동체를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와 연관짓는 것도 의사소통 참여자들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들을 밝혀냄으로써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다시금 목적합리성보다 상위의 합리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³⁴⁾

이 이론은 실재하는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전개되는 상이한 논증들이 규범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사항들을 선험화용론적으로 밝힘으로써 목

34) 이 논점에 따르면, 의사소통하는 행위자가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상호 검토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 요구사항들이 (진술의 상호 이해 가능성, 진술내용의 진리성, 발언자의 진실성, 진술의 규범적 정당성이) 의사소통의 장에서 검토된다. 이 검토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를 자유롭고 등등한 인격체로서 인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등의 조건들이 수행적 전제로서 채택된다.

적합리성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행위들도 자신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주관적인 상호 이해와 일련의 규범적인 전제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들은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규제적인 원리로서만 작동된다.

이러한 시도가 갖는 장점은 개별적이며 분산적으로 나타나는 운동들이 서로 그 전제로서 인정해야만 하는 규제적인 원리들을 (생존의 원리와 해방의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운동들이 지향해야만 하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들의 현상적인 다원성을 보호해주는 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규제적인 원리들은 구체적인 운동들의 자유로운 실천을 억누르거나 지배하는 방해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원리들은 상이한 운동들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론적인 규칙들일 뿐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운동들의 주장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그것들이 서로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테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도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을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까닭은 하나의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행위와의 연대의 기반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질적이기까지 한 목표를 갖고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현재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양상을 기초로 일상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공적인 담화의 형태로 주제화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갖고서 확산되려면 그것들에 대한 타당성 요구를 논리적인 차원에서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앞으로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철학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대의 형태를 설정하고 그 연대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제공하는 규범적

틀을 제시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전략적인 연대가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연대를 평가할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만 하는데, 이 기준은 선협화용론적 의사소통 공동체 이론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다. 만약 개별적인 운동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전략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위해 그 기준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지 않는다면, 이 개별운동들은 오직 비판적인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그 비판의 대상(목적합리성)이 존재해야지만 자신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던가, 아니면 또다시 체계 내부에서 개량화되거나, 서로 단절된 상태로 순전히 전략적인 연대와 연대 과정만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5. 결론에 대신해서: 한국의 시민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고찰.

1980년대 후반부터 그 영역을 강화시켜 온 한국의 시민운동은 서구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그 사회 경제적,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사회국가, 복지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형식적 민주화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요소가 국가 및 경제구조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구조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역으로 이 국가와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전근대적인 요소가 시민사회에 다시 적용됨으로써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재벌의 소유권 대물림이나 국가와 경제의 유착, 엘리트 카르텔 등이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가 가족이기주의로 흐르거나, 학연과 지연에서 유대를 찾는 비합리적인 연고주의를 강화하는 장으로 사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이것은 근대

적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고갈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비합리성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연원하기보다는 국가 및 경제에서 연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문제는 국가 및 경제가 너무나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³⁵⁾

따라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편으로는 전통과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근대적 합리성을 시민사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경제구조에 대항해서도 정착시켜야 하는 독특한 입장에 처해 있다. 즉, 전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천민자본주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 강한 연고주의 등의 전근대적인 요소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베버적 의미에서의 형식적 내지는 합목적적 합리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강력한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제한적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구적이며 전략적인 목적 합리성의 병폐도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갈수록 화폐와 권력은 생활세계 깊숙이 파고들어서 일상적인 삶과 삶의 목표를 규정하는 데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문제가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중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목적 합리성의 체계가 요구되지만, 그 목적 합리성을 지향하고 있는 권력과 화폐의 영역의 월권행위를 비판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에서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그러한 복합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의 시민운동이 이러한 복합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시민운동과 구별되는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

35) 참고: 김정훈(2001) 157쪽. 그는 이것을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체계의 생활세계화’의 동시 진행으로 파악한다.

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사회운동과 차별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주로 체계적으로 합리화된 국가와 제도정당의 ‘관료화’와 목적합리성을 앞세운 시장의 지배에 대항하고 있는 서구의 새로운 사회운동과는 달리, 한국의 시민운동은 왜곡된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와 합리화라고 하는 ‘근대적’ 과제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즉, 현 단계 한국의 종합적 시민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성격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독재적 국가와 독점적 시장 구조의 민주적 전환을 위해서 노동·삼권과 같은 근대적 권리의 쟁취나 국가권력의 민주화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그리고 소액주주 운동, 경제민주화운동 등의 과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구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하게 내장하고 있다.³⁶⁾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이 공공의 이익(공동선, 공동선)을 대변하고 있을까? 만약 공익성이 담론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명분싸움이거나 힘의 관계를 통해 힘센 쪽의 담론으로만 파악된다면, 시민운동의 계급적인 특성을 밝히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의 공익성이 담론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구사회운동과 새로운 사회운동의 측면을 광범위하게 고려하면서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정부와 제도정치가 대행하지 못한 대의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와 시장의 유착관계를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립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의 공론 영역을 복원해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³⁷⁾

36) 참고: 조희연(2001) 244쪽.

37)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지난 10여 년 간 해온 역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첫째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둘째 시민대중의 이

이 공론 영역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개발 독재 시대에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상실했던 시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고 관찰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서는 이 영역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경쟁하며 또 일정 부분 수렴되는 장으로써 시민 사회의 상이한 주장과 이해관계가 관철되거나 폐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다양한 세력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의 장이라면 그들의 다양한 주장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각축하는 공론영역은 시민사회 내의 여러 세력 사이의 갈등과 그 갈등의 해소가 보다 성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하다. 즉, 이곳에서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주장되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성찰적 정당화가 (더 나은 논증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반으로 상호간의 타당성 요구가) 검토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적 힘과 합리성이 작동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토론과 의사소통을 위한 이상적인 절차가 논증의 조건으로 정착됨으로써 그 테두리 안에서 실용적인 고려나 타협이 이루어지고 또한 정의의 담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절차주의적 관점에 의거해서 실천이성은 근거설정되지 않은 채 전제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이나 특수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윤리적 실체에서 벗어나 논증의 규칙과 논증의 형식의 장에서 인격체의 상호 인정과 동등한 권리 부여와 같은 규범적인 전제들을 근거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범들이 의사소통 행위가 일어나는 공론의 장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즉 의사소통 행위의 구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에서의 보편성과 공공성 추구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세력들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단체들의 주장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들은 초계급적이거나 공익적인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며,

의를 대변하는 정책제안과 요구 그리고 그것의 제도화, 셋째 시민사회에 대한 민주적 계몽과 조직화였다. 유팔무(2001) 224쪽.

프티 부르주아적, 중간계급적 특수이익을 도모하면서 ‘공공선’이라는 담론을 펼치고 있을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³⁸⁾

이런 논점을 보다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하고 있는 유팔무는 이 논의에서 세 가지 논점을 도입한다. 하나는 시민사회가 담론의 수준에서 뿐 아니라 힘이나 이해관심의 면에서 계급별, 집단별로 균열상태를 보인다는 점이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각자 특수이익만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수이익들이 중첩되는 지점, 그리고 종합되는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은 공통의 이익,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이익은 특수이익과 어떤 부분은 상호 배치되고 또 어떤 부분은 상호 중첩되는 교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계급화 사회집단들의 활동이 실제에 있어서는 각자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거나 균형을 이루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를 지닌다는 점이다. 즉, 시민운동 단체들은 공익과 특수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쪽에 치중하느냐 하는 것은 개개 단체들마다 정도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³⁹⁾

이처럼 구체적인 현실을 중심으로 파악할 경우 중첩과 분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첩되는 지점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추적을 할 경우 특수이익을 특수이익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결코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38) 계급적 이익을 중심으로 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중간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닌 반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 사이에 교차되는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유팔무는 파악한다. 유팔무(2001) 226쪽.

39) 유팔무(2001) 225쪽.

이들이 갖는 한계와 역기능은 첫째 시민운동 단체들이 주로 대정부활동에만 치중하고 정작 시민사회 자체에 대한 민주화와 개혁을 위한 활동에는 소극적이고 미흡했다는 점이며, 둘째 전통적인 사회운동단체들의 관심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차단하는 방향에서 활동을 주로 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와 역기능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스스로 공익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향 속에서 실제로는 특수이익을 대변해왔다는 것을 성찰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유팔무(2001) 231쪽.

특수이익에 의거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한, 그 이익이 아무리 중첩된다 해도 그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변환될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수이익에 대한 정당한 주장과 동시에 이 특수이익의 타당성이 상호주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공론 영역을 동시에 설정해야 한다. 경험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다시금 이 논의에 대한 의사소통적 행위의 차원에서의 반성적 상호이해와 타당성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시민 사회의 영역 내에서 자신의 이익과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장에 대한 상호 검증의 장으로서의 공론영역으로 진입해야 하며 이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주도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시민운동은 운동의 규범성을 담지하면서 현실적인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 한국의 시민운동은 공론의 영역에서 작동되는 실재하는 의사소통 공동체와 이 공동체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무제한적인 검토할 수 있는 논리적인 영역으로서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를 이념적으로 설정한 후 이들이 작동할 수 있는 전제로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자유롭고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등의 절차적인 조건들을 인정해야 한다. 2) 현실 시민사회 안에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힘에 모니 쟁탈전에서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 연대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연대는 첫 번째 조건 하에서만 정당하게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구체적인 연대의 움직임 속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

말하자면, 2)는 1)을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1)은 2)의 진행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1)은 행위자의 수행적 모순을 없애기 위한 전제들이며, 2)는 각 부분, 계층 연대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영역이다. 합리성의 차원에서 논의하자면, 2)의 목적 합리성의 체계는 1)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하위 구조로 운영될 때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화폐와 권력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체계에 대항해서 민주주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논점이 정당성을 얻을 경우, 우리는 일상생활세계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화폐와 권력에 의거한 명령체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거해서 비판하고 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보다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재구성해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 체계에조차 스며들어 있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기제들이 민주화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만 시민사회의 제 조직들이 민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구성원들의 민주적 토론과 성찰성을 강화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전사회적으로 활성화하는 전략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 따라서 진보적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보완 가능성을 모색하는 논점도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장을 필요로 하며 이 장 안에서의 무제한적인 논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의 논증적 힘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론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사이에 보완이 가능한 이유는 서구에서의 체제 내화된 노동운동과는 달리 한국에는 체계 안으로 수렴되지 않은 역동적인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역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민운동도 퇴행적인 모습을 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역동성과 새로운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그러나 바로 이러한 보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바로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성찰적 시민들에 의해서 작동되는 민주주의다. 즉, 이 연대 가능성이 실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논증적인 차원에서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장에서 성찰적 논증의 힘에 의거하지 않을 수

40) 조희연(2001) 249쪽.

없다. 이것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각자 그 자체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 내부의 구조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공공연한 형태로 논의되고 합의되는 절차가 작동될 때, 그 조직과 구성원들 모두가 민주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야 비로소 이 둘 사이의 연대가 순전히 전략적인 제휴관계에 머물거나 다른 종류의 연대와의 전략적인 힘의 대결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정당화를 바탕으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연대의 내용이 무제한적인 토론의 장에서 논증적인 설득력도 지님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운동 단체들 사이의 제반 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럴 경우에야 비로소 시민들이 스스로 돈과 권력에서부터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진입하고 그 안에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체화한 시민들이 주류를 이룰 때, 현실적인 전략으로 제안된 특수이익을 넘어선 보편이익의 정착이나 정당성을 갖춘 연대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검토되고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용혁(1998) 『이성과 사회』,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정훈(2001) 「진보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이론적 탐색」, 유팔무 · 김정훈 엮음 (200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알베르토 멜루치(1980)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in: 정수복 편역 (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막스 베버(1997) 『경제와 사회』, 박성환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유팔무(2001) 「비정부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유팔무 · 김정훈 엮음(200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조희연(2001)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망에 대한 연구」, 유팔무 · 김정훈 엮음(200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 요아힘 히르쉬(1983) “포드주의적 보장국가와 신사회운동,” 전태옥 옮김, in: 한국정치 연구회 정치이론분과 엮음(1993),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 Apel, Karl-Otto(1981) *Transformation der Philosophie*, Bd.1, 2. Frankfurt a.M.
- Apel, Karl-Otto(1982) “Ist die Ethik der idealen Kommunikationsgemeinschaft eine Utopie?”, in: Voßkamp, W.(Hrsg.) *Utopieforschung*, Bd.1 Stuttgart.
- Apel, Karl-Otto u.a.(Hrsg.)(1984) *Praktische Philosophie/Ethik*. Dialoge 2, Weinheim und Basel.
- Apel, Karl-Otto u.a.(Hrsg.)(1984) *Praktische Philosophie/Ethik*. Studentexte, Weinheim und Basel
- Apel, Karl-Otto(1987) “Die Herausforderung der totalen Vernunftkritik und das Programm einer philosophischen Theorie der Rationalitätstypen”, *Concordia* 11-1987 Frankfurt a.M.
- Apel, Karl-Otto(1990) *Diskurs und Verantwortung*, Frankfurt a.M.
- Apel, Karl-Otto und Kettner, Matthias(Hrsg.)(1992) *Zur Anwendung der Diskursethik in Politik, Recht und Wissenschaft*, Frankfurt a.M.
- Apel, Karl-Otto (1995) “Rationalitätskriterien und Rationalitätstypen”, in: Axel Wüsthube (Hrsg.) (1995) *Pragmatische Rationalitätstheorien*, Königshausen Neumann Würzburg.
- K.-O.Apel/H.Burckhart(Hrsg.)(2001) *Prinzip Mitverantwortung*, Königshausen Neumann Würzburg.
- Habermas, Jürgen(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1, 2,

- Frankfurt a.M.: Suhrkamp Verlag
- W.Kuhlmann(1985) *Reflexive Letztbegründung*, Freiburg/München
- Lübbe, Herman(1978) "Sind Normen methodisch begründbar?", in: Oelmüller, Willi.(Hrsg.)(1978) *Transzendentalphilosophische Normenbegründungen*, Paderborn.
- Offe, Claus(1987)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movements since the 1960s", in: Maier, Charles S. (ed.), *Cha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Cambridge
- Offe, Claus(1985)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in: *Social Research* 52/4
- Scheit, Herbert(1987) *Wahrheit-Diskurs-Demokratie*, Freiburg/München